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규정

2012. 03. 01. 신규제정

2012. 08. 01. 부분개정

2016. 11. 01. 부분개정

2020. 03. 01. 부분개정

2022. 07. 01. 부분개정

2025. 08. 01. 부분개정

2026. 06. 08. 부분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의한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자격, 계약 및 처우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종류 및 의무) ①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산학협력중점교원, 연구중점교원, 교육중점교원, 강의연구병행교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외국어 분야의 교육 또는 해외 대학 및 산업체와의 연계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의 교원을 둘 수 있다.

1. 산학협력중점교원은 학기별 주당 6시간의 강의를 담당하고 산학협력 및 취업 추진, 활성화 업무 및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등에 전념한다. 이 외의 사항은 산학협력중점교원 운영규정에 따른다.

2. 연구중점교원은 대학 내 사업단 및 연구소 등에서 외부기관·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지원되는 연구비 혹은 사업비가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지역사회·산업체·학계·연구기관·공공기관 및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연구과제 수행 등을 전담하며, 연구비 혹은 사업비가 소멸된 경우 임용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3. 교육중점교원은 계약에 따라 학기별 주당 12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고 전임교원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4. 강의연구병행교원은 학기별 주당 9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고 전임교원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대학의 연구과제 및 재정지원사업 참여 등에 전념한다.

5. 위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담당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비정년트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06.08.>

제3조(임용원칙) ①교원은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 제11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비정년트랙교원의 임용절차는 전임교원 신규임용 절차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공개강의는 실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직위는 조교수를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6.06.08.>

제4조(임용계약) ①신규임용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은 제7조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계약으로 재임용될 수 있다. 다만, 임용기간이 만료되어도 재계약되지 아니한 때에

는 그 직이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삭제 2026.06.08.>

제5조<삭제 2026.06.08.>

제6조(보수) ①교원의 보수는 임용직급·연구 및 교육경력·계약조건 및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계약서에 의한다.

②보수의 지급방법은 제1항에서 정한 연봉을 12회로 균등분할하여 매월 본 대학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제세금, 사학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은 월 급여에서 원천공제 징수한다.

③퇴직금은 사립학교연금법에 의하며 별도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초과강의료는 정년트랙 교원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재임용 절차 및 심사) ①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이사장은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교원에게 서면 통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이사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한다.

④교원인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교원 성과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기간 동안의 교원성과평가 결과에 근거한다.<개정 2020.03.01., 2026.06.0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⑥교원이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되지 아니하면 당연 퇴직된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는 이를 이사장이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전보건대학교 교원재임용 평정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0.03.01.>

제7조의2 <삭제 2026.06.08.>

제8조(정년트랙 전환) ①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기간 동안의 재임용 평정결과가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학교 정책상 보직 및 임무를 수행하는 등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승인을 얻어 전환할 수 있다. 단, 전환에 대한 희망은 재임용 신청 시기에 맞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별지 제2-1호 서식]의 정년트랙 전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확인한다.<개정 2016.11.01., 2025.08.01. 2026.06.08.>

②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동일 전공 분야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신규채용이 있을 경우에 신규 임용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규임용 심사절차에 따라 임용하며, 채용이 최종 확정된 때에는 비정년트랙 임용계약은 정년트랙 임용 발령일로부터 자동 종료된다.<개정 2026.06.08.>

제9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의 교원인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2026.06.08.>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 중인 연봉제교원(외국인교원)은 각각 그 임용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0.03.01., 2026.06.08.>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계약서

학교법인 청운학원 이사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전보건대학교 교원 인사관리규정 및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1. "갑"은 "을"을 대전보건대학교 _____과에 비정년트랙 _____로 임용한다.
2. "을"의 임용계약기간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____년)로 한다.
3. "을"의 보수는 아래와 같이 연봉으로 책정하여 지급한다.
 - 가. 연봉액은 일금 _____원으로 정하며, 이 연봉액은 매년 갱신할 수 있다.
 - 나. 보수 지급은 상기 "가"의 연봉을 12개월로 균등분할 한 _____원을 매월 지급하되, 제세금 및 사학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공과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 다. "을"의 퇴직금은 사립학교연금법에 의하며,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을"의 주당책임 강의시간은 _____시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에 의하여 책임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을"의 직무내용은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한다.
 - ① 산학협력중점교원 : 학기별 주당 6시간의 강의를 담당하고 산학협력 및 취업 추진, 활성화 업무 및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등
 - ② 연구중점교원 : 지역사회·산업체·학계·연구기관·공공기관 및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연구과제 수행을 전담 등
 - ③ 교육중점교원 : 학기별 주당 12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고 전임교원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 등
 - ④ 강의연구병행교원 : 학기별 주당 9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고 전임교원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대학의 연구과제 및 재정지원사업 참여 등
5. 주당책임 강의시간이 _____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6. "을"은 대전보건대학교 교원으로서 대학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본책무(강의·실습·연구·산학협력)는 물론 "갑"으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갑"의 교육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을"은 타고 또는 타 기관에 출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없이 출강했을 때 해당 월의 보수를 외부출강 일수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한다. 개인사정 및 공휴일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은 반드시 보강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8. "을"은 일주일에 4일 이상 출근해야 한다.

9. “을”은 지정된 기간에 수강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종강 후 수강 학생으로부터 강의 평가를 받는다.
10. “을”이 질병, 부상 등으로 치료 중일 때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병가를 허용한다.
11. “을”의 재임용 절차 및 심사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 규정 제7조에 의한다.
12. “을”은 기타 수업에 대한 모든 사항은 학과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을”의 계약기간의 만료는 학기개시일전으로 한다.
14. “갑”은 “을”이 아래 항목에 해당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 나. 신체 이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다. 복무사항의 의무와 계약사항을 위반할 때
 - 라. 교수 자격인정에 필요한 학력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고용된 경우
 - 마.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 하였을 경우
 - 바.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임용되지 아니할 경우
- 사.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자의 동의를 얻어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용자는 고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본 계약은 “갑”과 “을” 양방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며,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며,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한다.
16.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보건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 규정 및 교원인사 관련규정에 의한다.

년 월 일

임 용 자 갑 : 학교법인 청운학원 이사장 (인)

피임용자 을 : (인)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0.03.01.><전면개정 2026.06.08.>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 신청서

피평가자 인적사항	소 속		
	사 번		
	계약기간		
	성 명		
임용사항	평가대상기간		
	임용구분 (해당란에 O표)	산학협력중점교원	
		연구중점교원	
		교육중점교원	
		강의연구병행교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전보건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삭제 2026.06.08.>

[별지 제4호 서식]<삭제 2026.06.08.>

[별지 제5호 서식]<삭제 2026.06.08.>

[별지 제6호 서식]<삭제 2026.06.08.>

[별지 제7호 서식]<삭제 2026.06.08.>

[별지 제8호 서식]<삭제 2026.06.08.>

[별지 제9호 서식]<삭제 2026.06.08.>

[별지 제10호 서식]<삭제 2026.06.08.>